

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

1998. 11. 4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년 10월 23일 조명호 의원 외 3인 발의
나. 회부일자 : 1998년 10월 23일
다. 상정일자 : 제27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 제1차(98. 11. 3) 내무위원회 상정
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의원 조명호)

가.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, 이천시의 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 시켜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이천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익금 및 기타 수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.(안 제2조)
-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출연금과 이익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.(안 제3조)
- 기금중 시의 출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매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운용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.
(안 제4조 및 안 제11조, 안 제13조)
- 기금 및 보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함.(안 제6조)

(제27회 - 2차 본회의)

-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,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실장,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 담당주사로 함.
(안 제12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유장상)

본 제정조례안은 이천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단체에 기금을 조성하고,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,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증가를 예상하고 시의 재정을 고려할 때 기금을 지원하는데는 이천시의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구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판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일부 수정의결

7. 기타사항 : 없 음

붙임 : 1.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2. 수정안조문대비표

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1998. 11. 4

제 안 자 : 내무위원회 위원장

1. 수정이유

이천시 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 및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과 추천위원의 범위에 관한 정수를 조정하여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.

2. 수정주요골자

- 가.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인사중 문화원장을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예술단체장으로 변경하여 제명에 부합되도록 함.(안제6조)
- 나. 심의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자의 추천인원 범위를 변경 조정함.(안제6조)

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제6조제4항중 “문화원장”을 “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예술단체장”으로 하고, “5인”을 “6인”으로 하며, “6인”을 “5인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<p>제6조(기금운용심의회) ①~ ③(생략) ④ 위원은 문화공보실장과 지방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<u>문화원장이 추천하는 5인</u>, 시장이 추천 하는 6인, 이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한다. ⑤~ ⑥(생략)</p>	<p>제6조() ①~ ③(제정안과 같음) ④ ······ ······ <u>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예술단체장</u> ··· 6인 ······ 5인 ······ ······ ⑤~ ⑥(제정안과 같음)</p>